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23년도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3. 10. 4.(수) / 공공협 사무국

### □ 회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 단체의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 관련 집단적 민원 제기
- (목적) 각 도서관의 대처방안 및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추후 대응방향 논의

### □ 회의 개요

- (일시) '23. 10. 6.(금), 14:00~15:30
- (방식) 화상회의(ZOOM) \* 13:30부터 영상회의 채널 접속 가능
- (참석대상) 시·도지부 및 운영위원도서관 등 37개관
- (주요내용)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공유 및 추후 대응방향 논의

### □ 운영위원 협조사항

- (제출방법) **협의회 이메일(kpla@korea.kr)**로 '23.10.5.(목) 17:00까지 제출
  - 참석 가능 기관 : 접속 링크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
  - 참석 불가능 기관 : 위임장

붙임 1. 위임장 1부.

2.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 보유현황 관련 민원 내용 1부.
3.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성명서 1부.
4.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부. 끝.

붙임1

위임장(불참기관)

## 위 임 장

### ■ 불참합니다.

(사)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에게 위임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대리인) 도서관명 :

운영위원 :

위와 같이 2023년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임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위임합니다.

2023년 10월 일

도서관명 : (직인)

운영위원 :

###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장 귀하

※ 제출 : '23.10.5.(목) 17:00까지 사무국(이메일: kpla@korea.kr / FAX: 02-590-0686)

※ 성회를 위해 위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 보유현황 관련 민원

제 목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목록 실태조사 요청
접 수 일	2023-09-12
내 용	<p>아동이나 청소년이 읽기에 적절치 않은 도서로 보이는 책들이 지자체 관내 도서관에 불특정 하게 분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해당도서 보유한 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p> <p>총 148권의 도서 목록을 공유하겠습니다. 관내 시.구.군.면.리 소재 내에 있는 국공립, 시립 단위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해당도서 보유한 도서관 실태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위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도서읽히기 일환으로 이해하시고 해당도서 목록보유 도서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 도서목록은 붙임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p>

###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내의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2)

'도서관과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도서관권리선언(미국도서관협회 2019)

둘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셋째,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수집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념적, 종교적 등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 오랜 금서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의 검열과 봉쇄로 감금되었던 무수한 책이 후에 고전으로 격상되고, 귀환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계, 독서 및 출판단체 등 유관 단체는 연대하여 최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023. 7. 31.

한국도서관협회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김신영입니다.

지난 7월 31일 협회 동위원회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曁승진 회장님, 오지은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님, 박종택 변호사님, 지적자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현장의 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적 지원의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1.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조사(설문조사)와 각 사안별 분석
2.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가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항에 관한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ALA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협회 차원에서 제시할 지적자유 침해(도서 검열) 대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은 민원인에게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입수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민원인 개인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민원사항 접수를 받고, 해당 자료의 재심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민원인은 해당 자료가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어떤 점이 문제가 된 사항인지에 관하여 서면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3. 이후 도서관은 내부 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혹은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심의합니다. 내부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재심의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위원회는 일부 내용이 아니라 해당 도서 전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내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는 지적자유 침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향후 협회에서 진행할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9.26.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